

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22-36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정함(안 제2조)

- 1)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수 30개 이상 밀집 구역
- 2)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

나.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정함(안 제3조)

- 1)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
- 2)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등

다.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정함(안 제4조)

라. 골목형상점가 취소를 정함(안 제5조)

마.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권장, 재정 지원을 정함(안 제6조·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의2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22. 2. 7.~2. 28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양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골목형상점가 기준)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1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“상인”이라 한다)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
2.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

제3조(골목형상점가 신청)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(변경도 포함한다) 신청을 해야 한다.

1.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
2.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
3.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
4.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

제4조(골목형상점가 지정)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, 상권의 규모,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.

제5조(골목형상점가 취소)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
2.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3.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.

제6조(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)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 지원)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골목형상점가 지정(변경)신청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골목형 상점가 개요	명 칭	대표자 성명			
	소재지	전화번호			
	규모	토지 면적: m ² , 건물 연면적: m ² , 영업장 면적: m ² , 점포 수: 개			
	구역 상세	지번(주소)	면적(m ²)	점포 수	

상인 조직	명칭	대표자 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	
	설립일	회원 수		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 「거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(변경) 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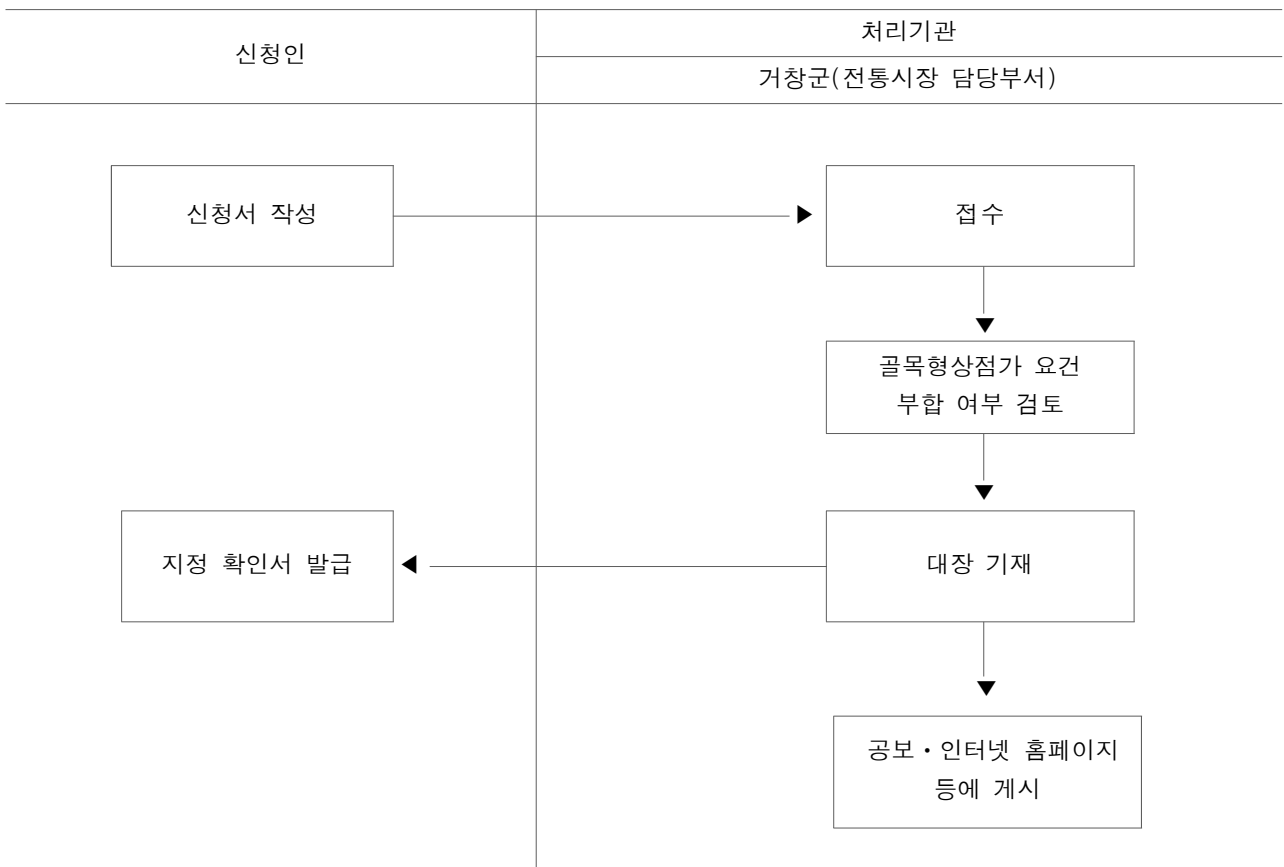
거창군수 귀하

붙임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(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) 명부 1부 2.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.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.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	수수료 없음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제 호

골목형상점가 지정(변경)확인서

1. 골목형상점가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소재지:
4. 면적/점포수: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 및
「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항에
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습니다.

년 월 일

거창군수

직인